

인정 수속 개시 통지서(수입자용)를 받은 분께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물품은 법률에 의해 ‘수입해서는 안되는 화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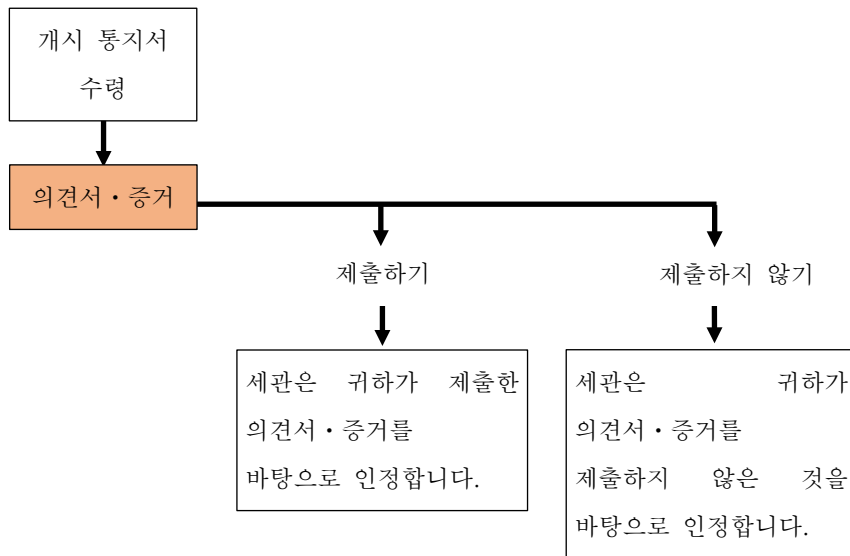
세관 검사에서 지적 재산을 침해한다고 사료되는 물품을 발견한 경우에 그 물품이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관이 인정하기 위한 수속을 ‘인정 수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귀하에게 송부한 통지서는 이 인정 수속을 개시함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인정 수속 결과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물품은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이 되어 수입할 수 없습니다.

1. 인정 수속 이미지

‘개시 통지서’: 인정 수속 개시 통지서(수입자용) (세관 양식 C 제 5810 호)를 말합니다. 이하 동일.



(주)귀하가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이 아닌(지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관의 인정 기초가 바뀝니다.

귀하가 의견서·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귀하에게 불리한 사실로 세관이 고려하므로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의견서·증거 제출에 대해

화물이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에 해당하지 않는(지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시 통지서의 ‘8.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에 기재되어 있는 기한까지는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일본어 이외로 기재된 서류는 일본어로 번역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기록한 의견서(하기 참조) 및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증거(하기 참조)를 개시 통지서 하부에 기재된 [연락처] 로 송부해 주십시오.(세관에서 송부한 개시 통지서는 동봉하지 말고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서·증거를 제출하면 화물을 반드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출된 의견서·증거는 권리자에게 공개됩니다.(권리자가 제출한 의견서·증거는 귀하에게 공개됩니다.)

인정 수속 결과,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수입할 수 있는 것】

- ① 특허권, 실용 신안권, 육성자권, 회로 배치 이용권에 관해서는 업무로서 수입된 것이 아닌 것.
 - ② 의장권, 상표권에 관해서는 업무로서 수입된 것이 아니고 또한 외국에 있는 사람이 업무로서 외국에서 일본 국내에 타인을 통해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닌 것.
 - ③ 저작권, 저작 인접권에 관해서는 국내에 배포할 목적을 가지고 수입된 것이 아닌 것.
- (주)상기 ① 및 ②의 ‘업무로서’ 또는 상기 ③의 ‘배포하는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수입 목적, 수입자 등 및 화물을 보낸 자의 직업 또는 사업 내용, 수입 거래 내용, 수입 화물의 수량 및 상황과 과거 수입 실적 및 인정 수속 개시 실적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합니다. 따라서, 수입 화물의 수량이 1 개인지 여러 개인지는 ‘업무로서’ 또는 ‘배포하는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침해 의의 물품이 1 개인 경우라도 인정 수속을 집행하고 제출된 증거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④ 권리자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고 수입된 것.
 - ⑤ 상표권 등에 관한 병행 수입품
 - ⑥ 기타 지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것

【의견서에 대해】

임의 양식에 다음 사항을 일본어로 기재하여 증거와 함께 세관에 우송해 주십시오.

- 작성일
- 귀하의 이름 및 후리가나, 주소, 전화번호, 직업
- 개시 통지서 번호(개시 통지서 오른쪽 위에 기재된 번호 예: 123A-12345)
- 상품명, 개수
- 지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

【지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개시 통지서의 5.에 기재된 지적 재산의 내용에 따라,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① ‘업무로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사람이 업무로서 일본에 가져온 것이 아닌 것’을 이유로 주장하는 경우
 - 화물을 수입하는 목적, 귀하의 직업 및 수입 거래 내용(구입처, 구입 금액, 지불 방법 등), 화물을 보낸 자의 이름 또는 명칭, 직업 및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대상: 의장권, 상표권)
- ② ‘업무로서 수입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유로 주장하는 경우
 - 화물을 수입하는 목적, 귀하의 직업 및 수입 거래 내용(구입처, 구입 금액, 지불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대상: 특허권, 실용 신안권, 육성자권, 회로 배치 이용권)
- ③ ‘배포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닌 것’을 이유로 주장하는 경우
 - 화물을 수입하는 목적, 귀하의 직업 및 수입 거래 내용(구입처, 구입 금액, 지불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대상: 저작권, 저작 인접권)
- ④ ‘권리자로부터 화물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은 것’을 이유로 주장하는 경우
 - 권리자로부터 받은 허락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대상: 모든 권리)

⑤ '적법한 병행 수입품인 것'을 이유로 주장하는 경우

적법한 병행 수입이 되기 위한 요건(하기 참조)을 충족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대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⑥ 기타 이유로 '지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

지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대상: 모든 권리)

【지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증거에 대해】

지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그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증거는 주장하는 이유에 따라,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모두 복사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① '업무로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사람이 업무로서 일본에 가져온 것이 아닌 것'을 이유로 주장하는 경우

가. 귀하와 화물을 보낸 자와의 사이에 거래한 메일, 편지 등

나. 귀하 및 화물을 보낸 자의 직업을 제시하는 자료

다. 수입 화물의 용도 또는 사용 목적을 제시하는 자료

라. 귀하 및 화물을 보낸 자의 신분 증명서

② '업무로서 수입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유로 주장하는 경우

가. 귀하의 직업을 제시하는 자료

나. 수입 화물의 용도 또는 사용 목적을 제시하는 자료

다. 귀하의 신분 증명서

③ '배포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닌 것'을 이유로 주장하는 경우

가. 귀하의 직업을 제시하는 자료

나. 수입 화물의 용도 또는 사용 목적을 제시하는 자료

다. 귀하의 신분 증명서

④ '권리자로부터 화물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은 것'을 이유로 주장하는 경우

권리자의 수입 동의서

⑤ '적법한 병행 수입품인 것'을 이유로 주장하는 경우

적법한 병행 수입품인 것을 제시하는 자료(아래를 참조)

⑥ 기타 이유로 '지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

지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제시하는 자료

【적법한 병행 수입품에 대해】

① 상표권에 관한 병행 수입품의 취급

상표권자 이외의 사람이 일본의 상표권 지정 상품과 동일 물품에 대해 그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붙은 것을 수입하는 행위라고 해도 다음의 가에서 다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적법한 병행 수입품으로서 취급되어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상표가 외국의 상표권자 또는 해당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 의해 적법하게 부여된 것인 경우

나. 해당 외국의 상표권자와 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인지 또는 법률적 및 경제적으로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관계임에 따라 해당 상표가 본국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일 경우

다. 본국의 상표권자가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해당 물품의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해당 물품과 본국의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를 붙인 물품이 해당 등록 상표를 보증하는 품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② 특허권에 관한 병행 수입품의 취급

가. 본국의 특허권자 또는 이와 동일시 되는 자(이하 ‘특허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국외에서 적법하게 확보한 특허 제품이 특허권자 등 또는 해당 제품을 수입할 권리를 가지는 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수입되는 경우에 다음의 (가) 및 (나)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귀하가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은 적법한 병행 수입품으로서 취급되어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가) 수입자가 양수인인 경우는 특허권자 등과 양수인 사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처 내지 사용 지역에서 본국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된 경우

(나) 수입자가 양수인에서 특허 제품을 양도받은 제삼자 및 그 후의 전득자인 경우는 특허권자 등과 양수인 사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처 내지 사용 지역에서 본국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되고 또 그 취지가 해당 제품에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

나. 상기 가의 특허권자 등과 양수인 사이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처 내지 사용 지역에서 본국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란 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로 판매처 내지 사용 지역에서 본국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다. 상기 가의 (나) 중 ‘그 취지가 해당 제품에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란 해당 제품 거래 시에 제품의 본체 또는 포장에 각인, 인쇄, 스티커, 택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처 내지 사용 지역에서 본국이 제외되어 있다는 취지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로, 해당 제품의 거래 시에는 그 취지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수입 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실용 신안권·의장권에 관한 병행 수입품의 취급

상기 ②의 특허권에 준합니다.

3. 인정 결과 통지

세관은 귀하가 제출한 의견서·증거 및 권리자가 제출한 의견서·증거 등을 바탕으로 화물이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는 화물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화물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4. 자발적 처리에 대해

귀하는 세관이 화물을 몰수할 때까지는 아래의 ‘자발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폐기 또는 멸각

귀하 자신 또는 통관업자나 국제 택배업자에게 의뢰하여 세관 직원 입회 하에 화물을 폐기 또는 멸각할 수 있습니다.

(2) 지적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또는 침해하는 부분의 절제 등에 의한 수정

귀하 자신 또는 통관업자나 국제 택배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이 있는 장소에 가서 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 또는 침해하는 부분의 절제 등의 수정(간단히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수정은 불가)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의 화물이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화물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절제한 부분(포장 등)의 수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환송

수출 무역관리령에 의한 수출 승인을 받으면 환송(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지만 수출 승인은 권리자의 동의가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상표권,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 승인되지 않습니다.

(4) 권리자에서의 수입 허락

귀하가 권리자에서 수입 허락을 취득하고 수입 동의서를 개시 통지서에 기재한 [연락처]의 세관에 제출한 경우는 화물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5) 임의 포기

임의 포기서(세관 양식 C 제 5380 호)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개시 통지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송부함으로써 화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속에 관해 궁금한 점은 세관이 송부한 통지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